

합천군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 시행내규

제정 2023. 11. 10. 내규 제30호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단위 부서별 업무 추진 실적의 자체 평가를 통하여 각종 평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내부평가에 관하여 상위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.

제3조(평가위원회) ①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해 내부평가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, 간사는 평가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. 단, 본부장이 공식일 경우에는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한다.

③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평가위원회 임무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내부평가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평가체계별 가중치 및 지표 결정, 변경 등
2. 경영실적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
3. 내부평가편람 및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
4. 내부평가 방법개선 및 결과조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내부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.

제5조(경영목표설정) ① 이사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경영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전항의 경영목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인수, 폐지, 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경영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.

제6조(경영실적평가) ① 내부평가 주관부서는 당해연도 내부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피 평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부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각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경영실적(내부평가 수행실적)을 평가편람(BSC평가지표 등)의 지표별로 작성하여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경영평가편람) ① 주관부서는 내부평가를 위한 경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편람(지침)을 작성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당해연도 내부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내부평가 지표개발 지침을 각 부서별로 통보하고 각 부서는 소관 업무별 내부평가 지표개선(안)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지표 개선(안)을 참고하여 당해연도 내부평가편람을 작성하여 내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체경영평가) 위원회에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부서의 장이 보고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의거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제9조(평가방법) 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위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들은 부서의 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근거로 보고의 성실성, 정확성 여부를 1차 검증한 후 평가 기준에 의거 실적을 평가한다.

③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부서별 순위를 결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.

제10조(평가결과 조치)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인사고과 및 평가급 반영, 포상금 지급, 문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9조 관련)

서 약 서

본인은 금번 경영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시에는 평가위원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
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1.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공명정대
하게 할 것이며, 개별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.
2. 업무 평가 중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 (인)

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